

www.acrc.go.kr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수도권·충청권)

2019. 6. 4(화) 14:00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수도권·충청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등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제도 운영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입체적으로 전달
- 법 적용대상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함으로써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 및 교감 강화
 - ※ 강원권(4.24), 호남·제주권(5.9), 영남권(5.16), 수도권·충청권(6.4) 소재 기관 대상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 6. 4.(화), 14:00 ~ 16:00/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참석대상 : 수도권 및 충청권 공공기관 등 청탁방지담당관, 청렴업무 담당자 등 교육 참석 희망자
- 주요내용 : 청탁금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 신고처리 관련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 설명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 세부일정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14:00 ~ 14:40 40' | 청탁금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 청탁금지제도과 |
| 14:40 ~ 15:00 20' |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 설명 | " |
| 15:00 ~ 15:20 20'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 " |
| 15:20 ~ 15:40 20' | 신고처리 관련 사항 | 청탁조사처리팀 |
| 15:40 ~ 16:00 20' | 질의응답, 의견청취 | 참석자 |

□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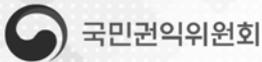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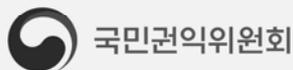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수도권·충청권 지역)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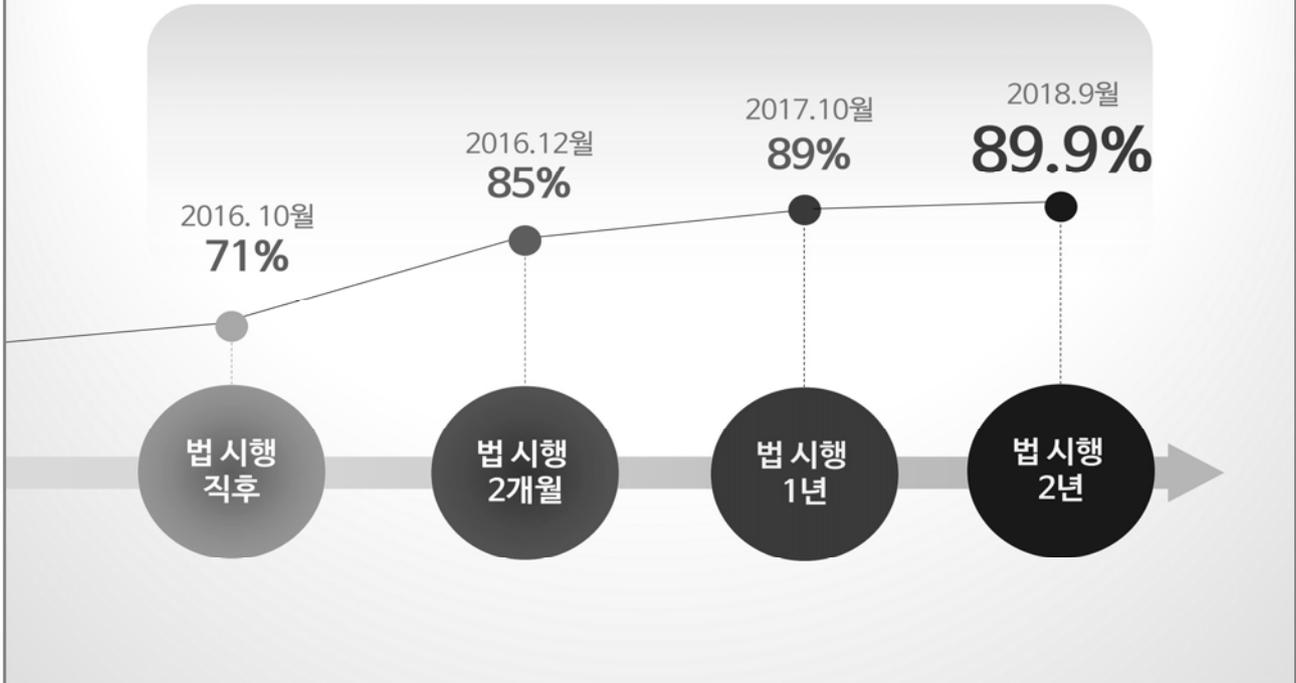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수도권·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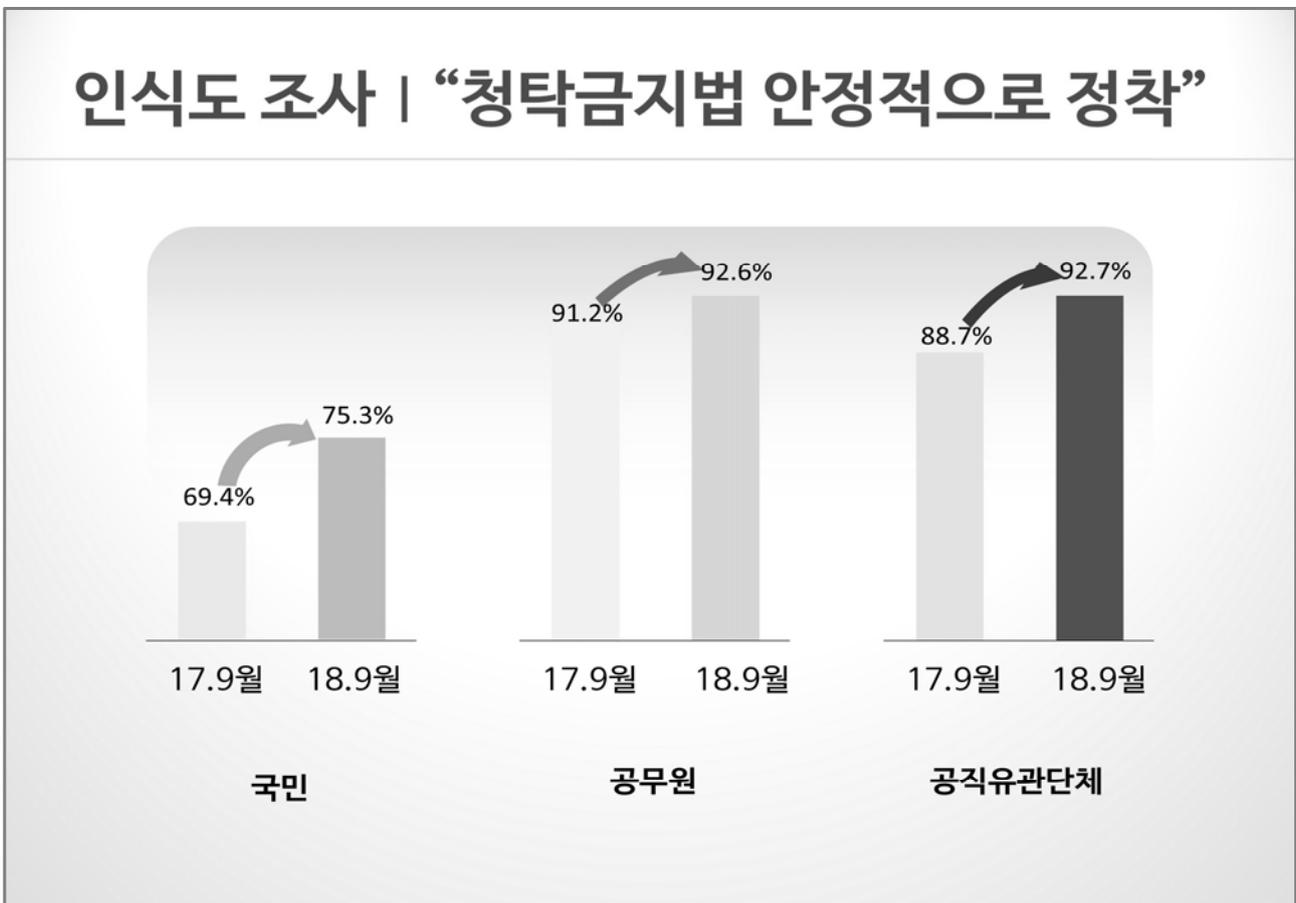
청탁금지법과 우리 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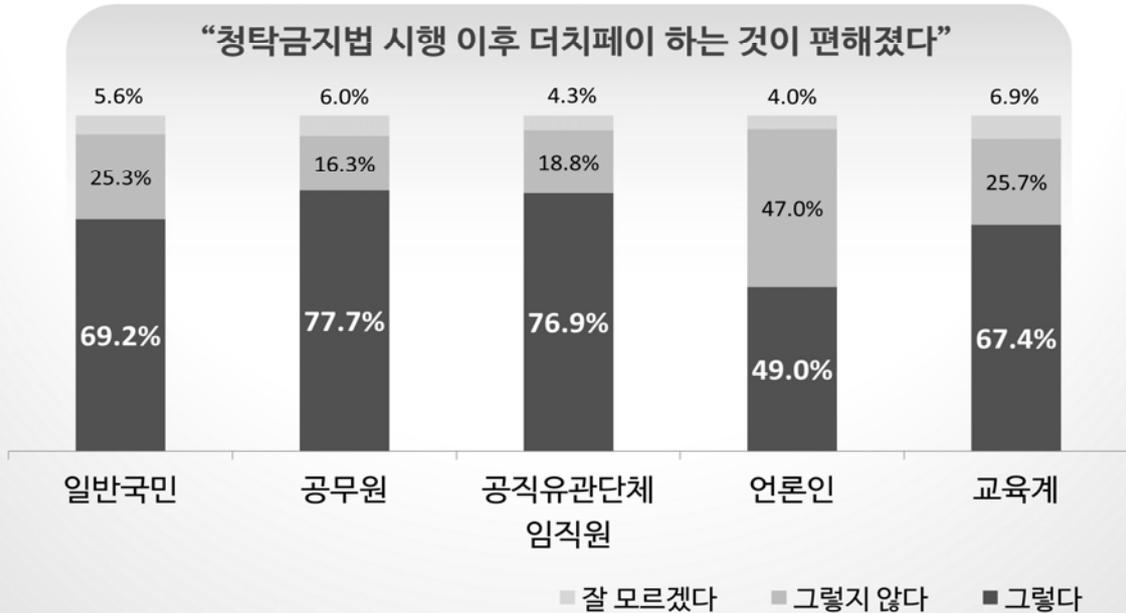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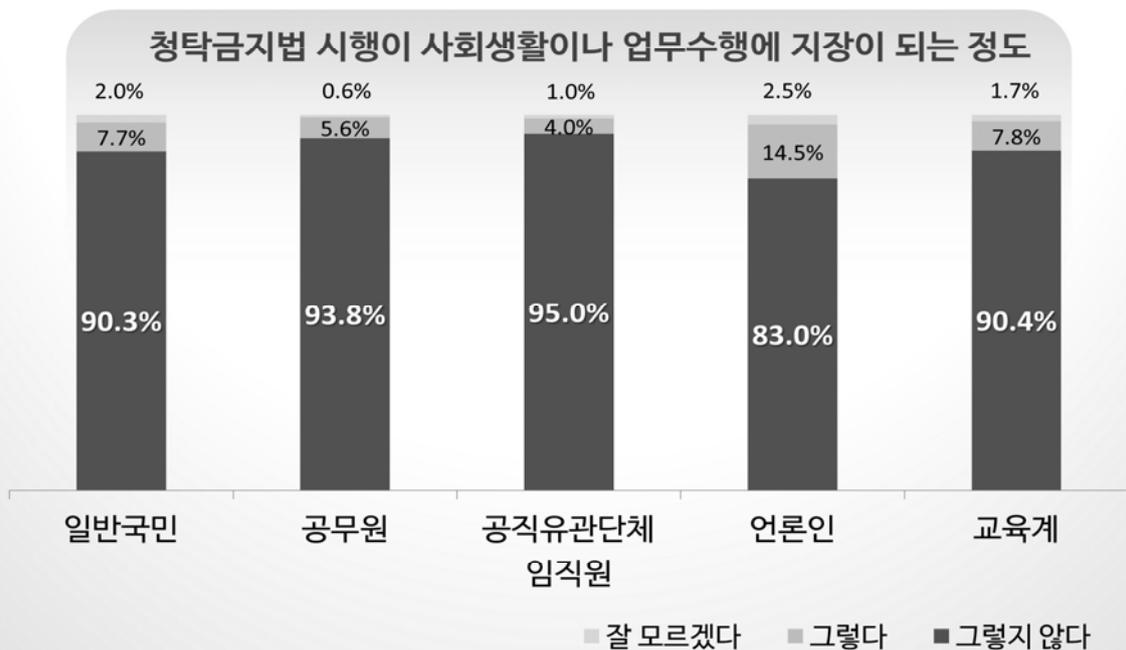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청탁금지법 안정적으로 정착”



인식도 조사 |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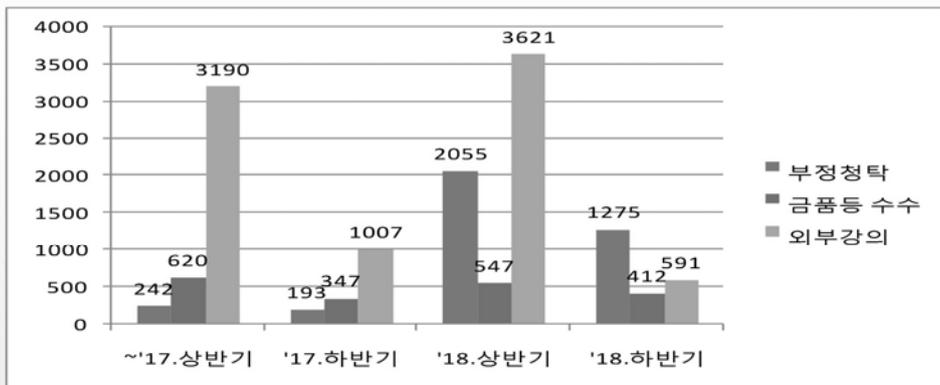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사회생활, 업무수행에의 지장





시기별 신고 접수 현황 총괄

- 부정청탁 3,765건, 금품등 수수 1,926건, 외부강의등 8,409건
- '18년 상반기 부정청탁 신고 크게 증가(채용비리 특별 점검)
- 금품등 수수 신고 중심 → 부정청탁 신고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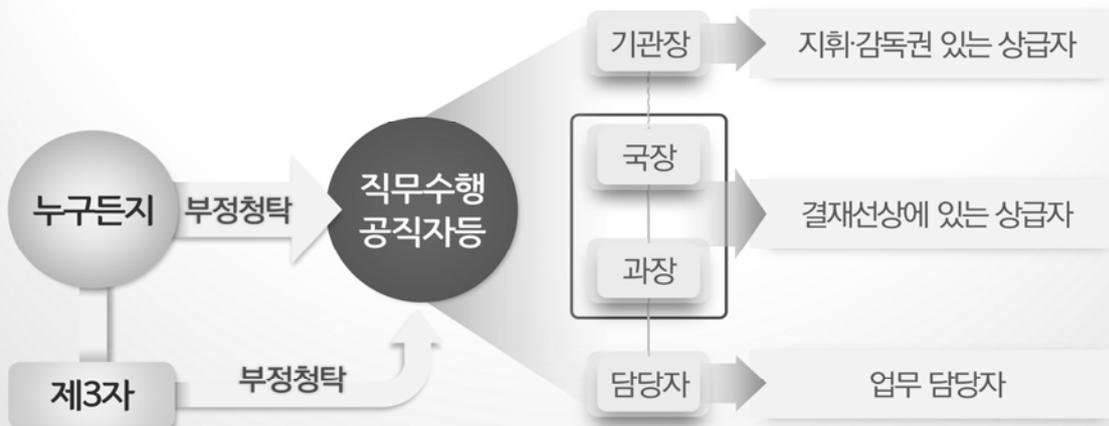
각급 기관 신고처리 현황 총괄

-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조사 중인 신고 3,589건
-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제재 절차 진행 527건
- 형사처벌, 징계 등 제재 확정 181건

| 구분 | 부정청탁 | 금품등 수수 | 외부강의 | 계 |
|-------------------------|------|--------|------|-----|
| 수사중, 과태료 재판 중 | 68 | 277 | 1 | 346 |
| 제재 확정(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 9 | 167 | 5 | 181 |
| 합계 | 77 | 444 | 6 | 527 |

부정청탁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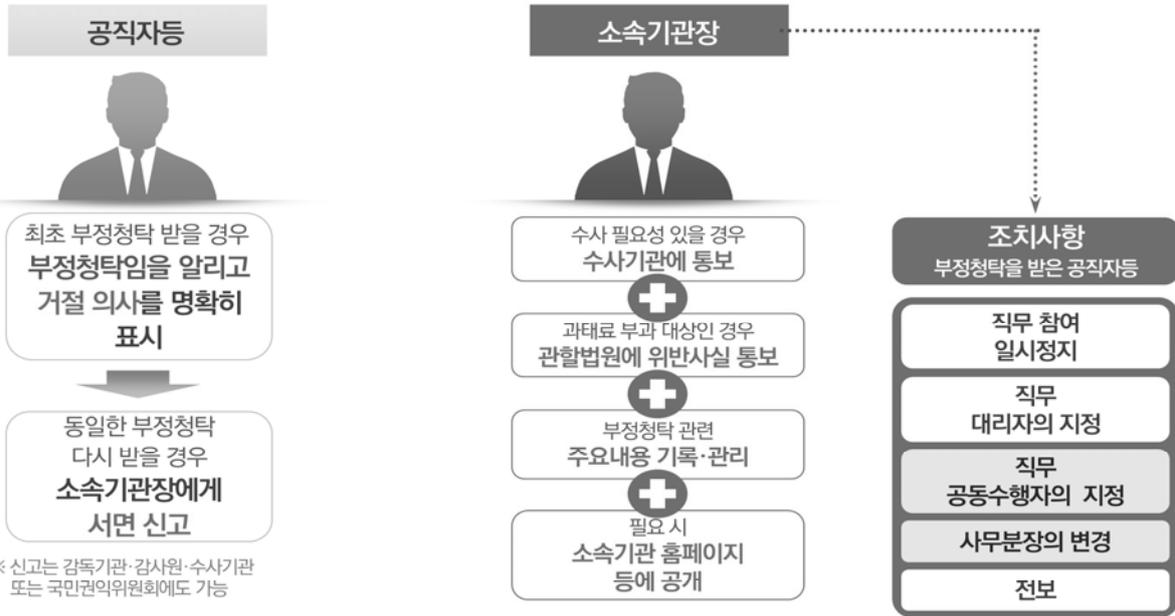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 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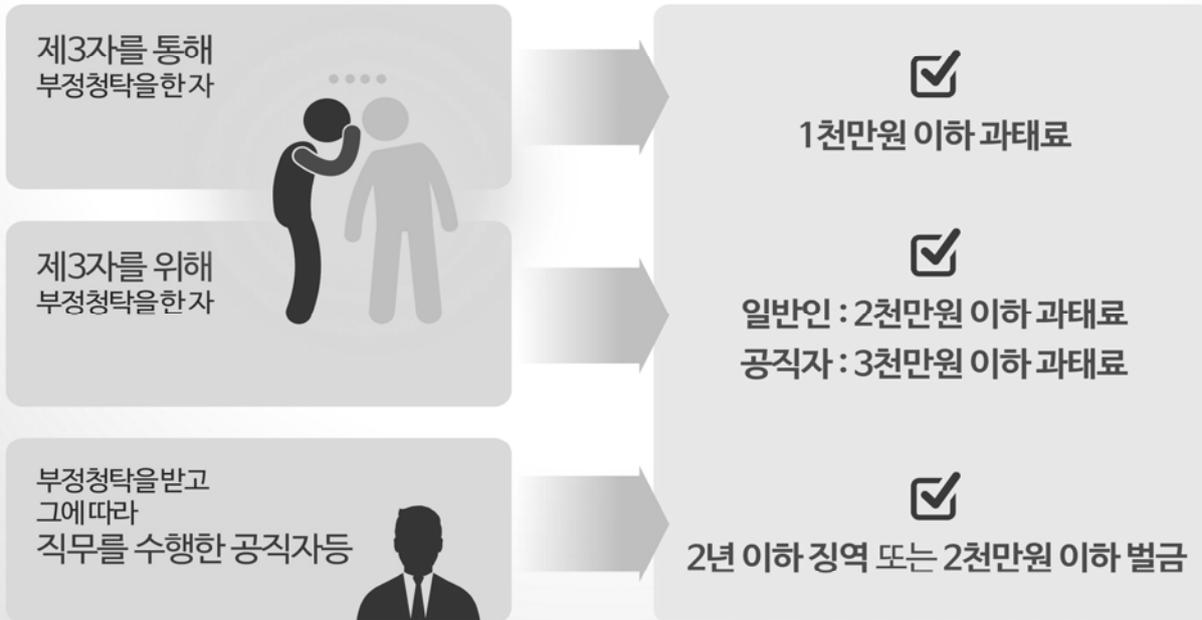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및 조치



5. 위반시 제재 (부정청탁)

II. 청탁금지법



< 참고 판례(2018과52) >

인정 사실

위반자는 2018년도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5백만원 부과

< 참고 판례(2017과57471) >

인정 사실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입학을 부정청탁

판 단

학부모는 5백만원 과태료
(교장과 교감은 각각 7백만원, 5백만원 벌금)

< 참고 판례(2018과157) >

인정 사실

위반자는 2017.7월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 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OO과 팀장으로, E를 B시청 OO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탁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정청탁
그외 위반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498,750원 상당의 향응 수수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참고 판례(2018과1028) >

인정 사실

위반자 A는 2017.10.17. 자신의 아들 위반자 B로부터 채용시험 종합 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A는 과태료 8백만원, B는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참고 판례(2018과42) >

인정 사실

공직유관단체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한 D의 아버지 A가 채용담당직원 E에게 전화하여 아들 D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뒤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내부 직원 6명에게 D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음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비위 정도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중한 점,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아들의 면접을 포기시킨 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여러 수상 실적을 고려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참고 판례(2017과101) >

인정 사실

특정인이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위반자 A ⇒ 교사 C, D에게, 위반자 B ⇒ 교사D, E에게 유리한 심사기준 채택을 부탁
위반자 B⇒교사F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의 변경을 부탁

판 단

위 교사들은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들로서, 교과협의회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 시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 해당
위반자A : C,D에 대해 각각 2백만원 과태료 부과
위반자B : D,E,F에 대해 각각 1백만원 과태료 부과

< 참고 판례(2017과4) >

인정 사실

위반자(퇴직자)는 하급자에게 특정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묵인지시)를 하였음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지도, 감독)를 위반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1천만원 부과(※부정청탁을 받은 상급자가 지시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상급자의 지시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과 동시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짐)

< 참고 판례(2018과1566) >

인정 사실

위반자들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소방서 및 부서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 문자메세지 발송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부정청탁의 공개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 공개 가능 (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
 - 제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 가능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 사항 공개를 통한 부정청탁 예방 목적
-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 경우는 3건에 불과 → 적극적 공개 필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위반자 조OO 등은 OO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OO'의 공연제작사인 도OO의 대표이사인 윤OO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윤OO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87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는 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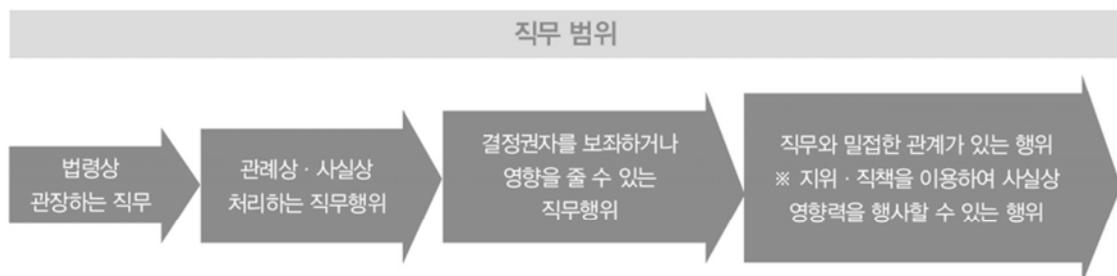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뇌물죄의 직무의 범위

참고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직무의 범위

- 「형법」상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직무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함
 -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언론 기사

東亞日報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A12면 사회

‘경찰총장’ 총경, 결국 청탁금지법도 무혐의?

경찰은 A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총경이 골프,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향응액수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영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참고 판례 >

인정 사실

○○지원 관내 변호사가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2만8천원을 몰래 지불한 사례

판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11만원(4배) 부과

< 참고 판례 >

인정 사실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통해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한 사례

판 단

제공자에 과태료 2배(9만원)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판단기준 제시

< 참고 판례 >

인정 사실

A시에서 여객운수사업등을 운영하는 회사가 A시의회의의원 12명에게 5만원 상당의 6년근 난발색삼 세트를 제공

판 단

- A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A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A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있음
- A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3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한 이후로서 장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공되어 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제8호 미해당

< 참고 판례(2017과214) >

인정 사실

위반자들은 시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들과 J축협 임직원들 22명 으로서 함께 63만3천원 상당의 식사

판 단

방에서는 의원들과 조합장 및 간부 16명 : 54만 1천원(33,812원)
홀에서는 의원들 수행원과 축협 팀장 등 6명 : 9만 2천원

< 참고 판례 >

인정 사실

이장협의회 회장 A는 이장협의회(71명) 명의로 읍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청으로 발령받은 B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

판 단

- 읍장은 국가 및 지자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이장협의회는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직무관련성)
- 현금의 원만한 직무수행 등 목적의 제공 가능 선물에서 제외
-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 제공하는 경우 합당한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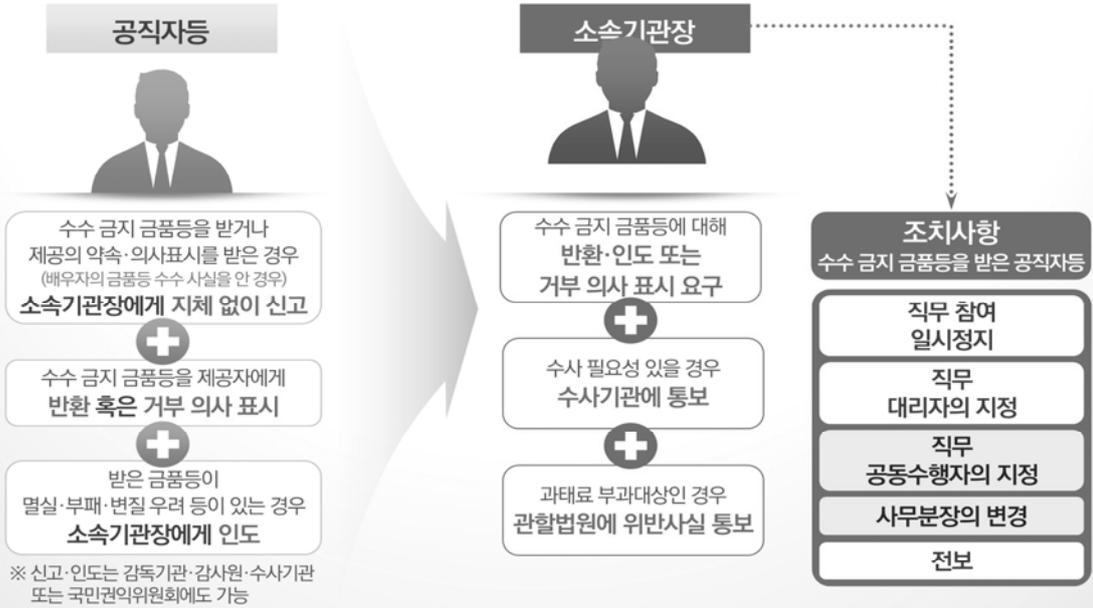
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총액의 과태료를 연대하여 부과할 것인지, 분할하여 부과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 신고 방법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직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 금지 |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참고 판례(2017과214) >

인정 사실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현장대리인이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감리 단장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판 단

제공자 소속 법인은 ① 전 직원에게 법 내용 및 준수 교육 실시, ② 위반자로부터 서약서를 제출 받고, 법 관련 해설집 배포, ③ 개별 공사현장에도 법 관련 내용을 공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 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 구비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금품등 수수 금지 신고 처리 현황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1,926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408건, 제재* 확정 167건

*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관련 사례

| | |
|----|---|
| 개요 | 국공립병원 직원이 1년여에 걸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 |
| 제재 | 수수한 공직자 : 과태료 2배(400만원) |
| 개요 |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센터의 직원이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취업사업 총괄 공직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
| 제재 | 제공자 : 과태료 2배(10만원) |

부적절 처리 사례 | 금품등 수수 금지

①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적 제재

관련 사례

| | |
|----|--|
| 개요 | 상급자 3인이 하급자들로부터 각 24.5만원, 4.1만원, 3.8만원 금품 수수 |
| 처리 | 과태료 부과 요청 없이 수수자·제공자 모두 건책, 불문경고 조치 |

②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비

관련 사례

| | |
|----|---------------------------------------|
| 개요 | 공무원에게 진정사건의 피신고인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택배로 제공 |
| 처리 | 공무원은 자진 신고, 제공자인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조치 미비 |

유형별 분석 | 금품등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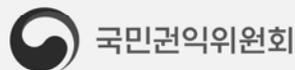
③ 수수자·제공자 간 제재 불균형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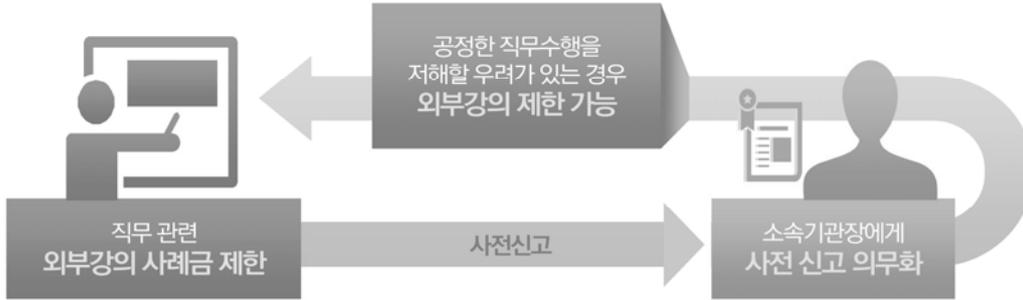
| | |
|----|---|
| 개요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임 비용 명목으로 금품 50만원을 수수 |
| 처리 | 수수자인 공무원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제공자인 직무관련자는 과태료 부과 요청하여 과태료 3배 부과 결정 |

④ 양벌규정 미적용으로 소속 법인에 대한 제재 미비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

-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구분 |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 1시간 상한액 | 100만원 | 40만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

외부강의등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징계처분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유형별 분석 | 외부강의등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8,409건, 과태료 부과 요청 6건,
과태료 부과 5건

관련 사례

| 개요 | |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6.9월~'17.9월 중 29회에 걸쳐 1천74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 과태료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40만원의 사례금을 초과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 과태료 |



제19조 (교육과 홍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 | 교육 현황

- (교육 현황) 각급 기관당 평균 4회 교육 실시
- 소속기관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교육 횟수가 가장 다수

'18년 각급기관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 기관유형 | 조사대상 기관 수 | 교육 횟수 | 평균 횟수 |
|-----------------------|---------------|---------------|-------------|
| 헌법기관 | 5 | 89 | 17.8 |
| 중앙행정기관 | 53 | 6,553 | 123.6 |
|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 260 | 3,593 | 13.8 |
| 공직유관단체 | 1,141 | 7,417 | 6.5 |
| 학교·학교법인 | 19,863 | 68,148 | 3.4 |
| 계 | 21,322 | 85,800 | 4.02 |

제도 운영 현황 | 상담 현황

- (상담 현황) 각급 기관이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실시한 질의답변 횟수는 총 19,532회로, 기관 평균 0.9회 실시

'18년 각급기관 청탁금지법 상담 현황

| 기관유형 | 조사대상 기관 수 | 상담 횟수 | 평균 횟수 |
|-----------------------|---------------|---------------|------------|
| 헌법기관 | 5 | 98 | 19.6 |
| 중앙행정기관 | 53 | 2,876 | 54.3 |
|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 260 | 4,034 | 15.5 |
| 공직유관단체 | 1,141 | 3,881 | 3.4 |
| 학교·학교법인 | 19,863 | 8,643 | 0.4 |
| 계 | 21,322 | 19,532 | 0.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상담

신고
접수·조사 등
처리

소속기관장
위반행위 처리

제도 운영 현황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지정 현황)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지정(99.8%)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기관유형 | 조사대상 기관 수 | 담당관 지정기관 | 미지정 기관(지정률) |
|-----------------------|-----------|----------|-------------|
| 헌법기관 | 5 | 5 | 0(100%) |
| 중앙행정기관 | 53 | 53 | 0(100%) |
|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 260 | 260 | 0(100%) |
| 공직유관단체 | 1,141 | 1,138 | 3(99.7%) |
| 학교 · 학교법인 | 19,863 | 19,816 | 47(99.8%) |
| 계 | 21,322 | 21,272 | 50(99.8%) |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해야 ...

독일어 GIFT

선물

여성 : 마음의 표시



독약

중성 : 양심을 병들게 하는 독약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수도권·충청권 지역)

신고자 보호 · 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목차



I. 신고자 보호제도

II. 신고자 보상제도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은밀성

신고활성화를 위한 보호·보상제도

- ✓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 ✓ 보상·포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신고유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 여부

자진신고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보호대상 ○
보상·포상대상 X

제3자신고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

보호대상 ○
보상·포상대상 ○

I.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비밀보장 제도

신분노출 금지

- 누구든지
- 신고자 인적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노출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권익위, 징계권자에게 위반자 징계요구 (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4항)

비밀누설 금지

- 신고처리업무 담당 공직자등
-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조사·형사절차 비밀보장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유형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블랙리스트 작성,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인·허가 등의 취소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조치 금지 권고, 보호조치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조치 사례 : 없음

| 사례1 | 사례2 |
|---|--|
| <p>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서 설계비 과다 지출 신고</p>  <p>기관 내부 직원</p> <p>“하향 전보” 원상회복 요구 등</p>  <p>해당 기관에 원상회복 요구, 과태료 500만 원 부과</p> | <p>정부출연기관의 퇴직금 과다지급 사실 신고</p>  <p>기관 내부 직원</p> <p>“해임처분” 원상회복 요구 등</p>  <p>해당 기관에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 기관장에는 과태료 1,000만원 부과</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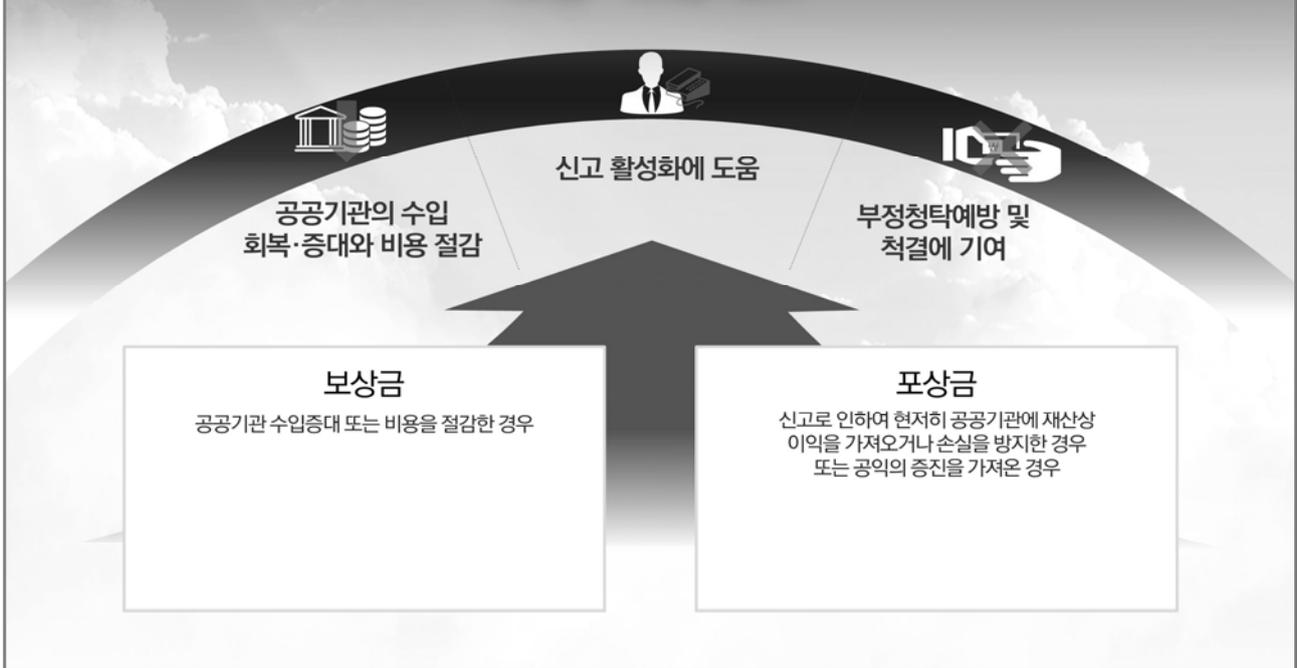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기타 보호제도

- | | |
|---|--|
|  <p>신고자·협조자 책임감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감면 √ 신고 관련 발견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계, 행정 처분 시 감면 |
|  <p>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전출입, 파견 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
|  <p>불이익조치의 추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 √ 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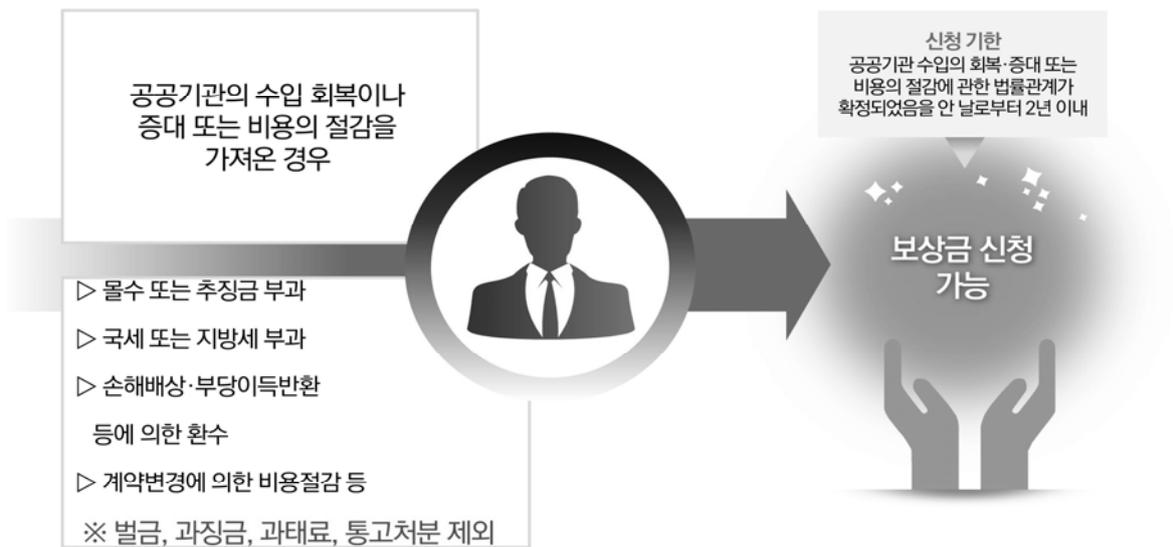
II. 보상금·포상금 제도

보상·포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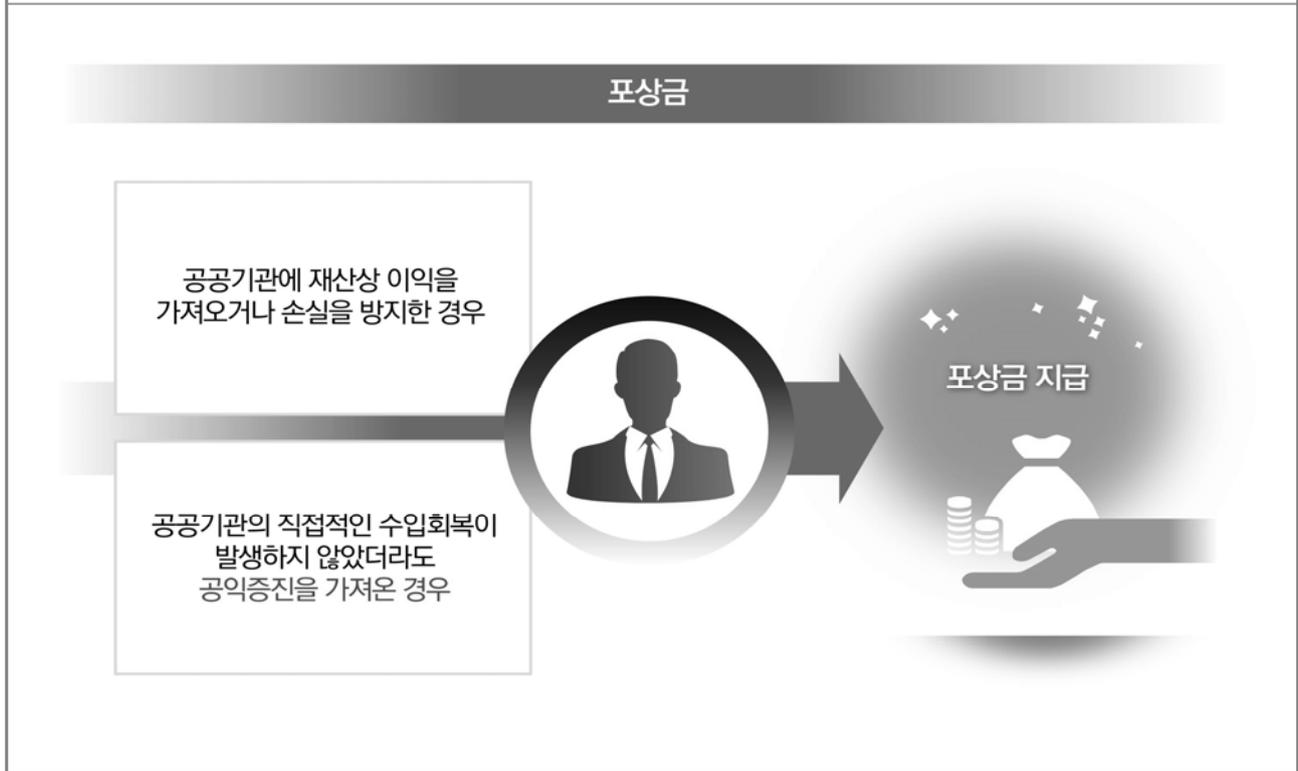


1. 보상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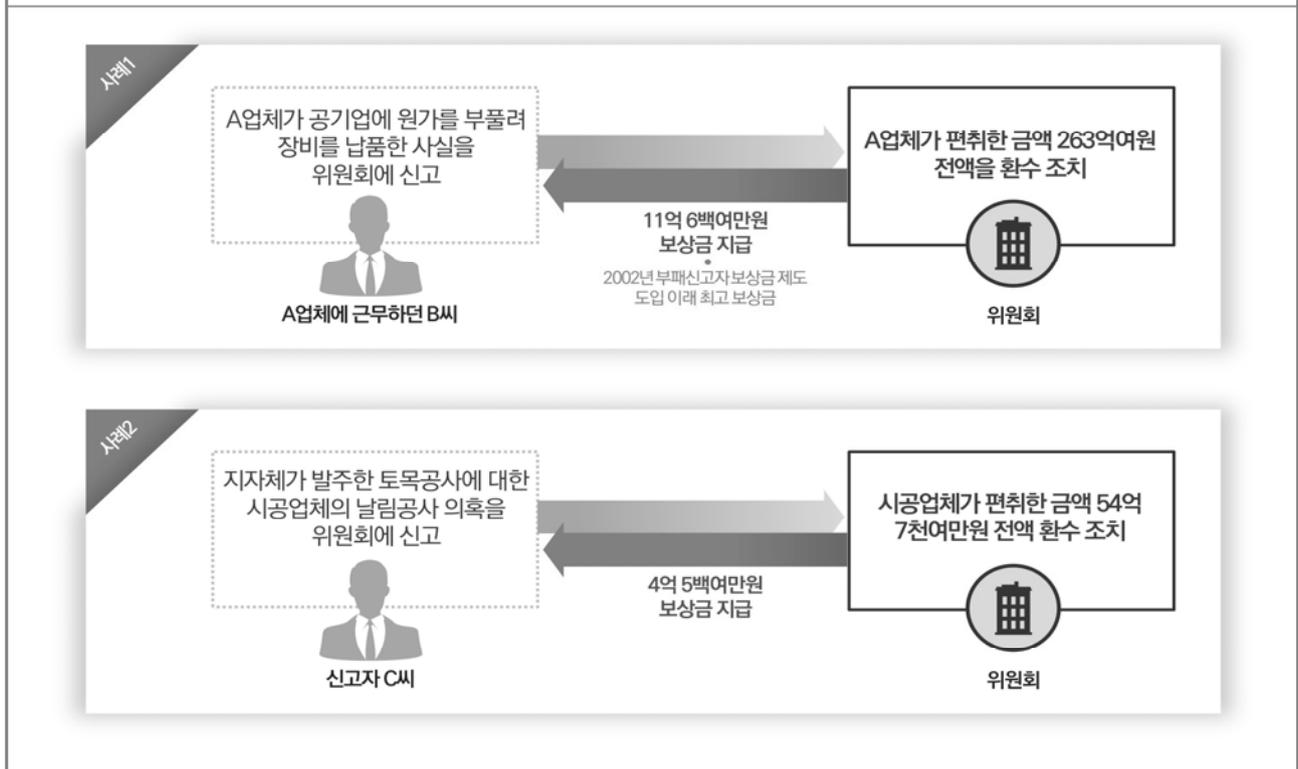
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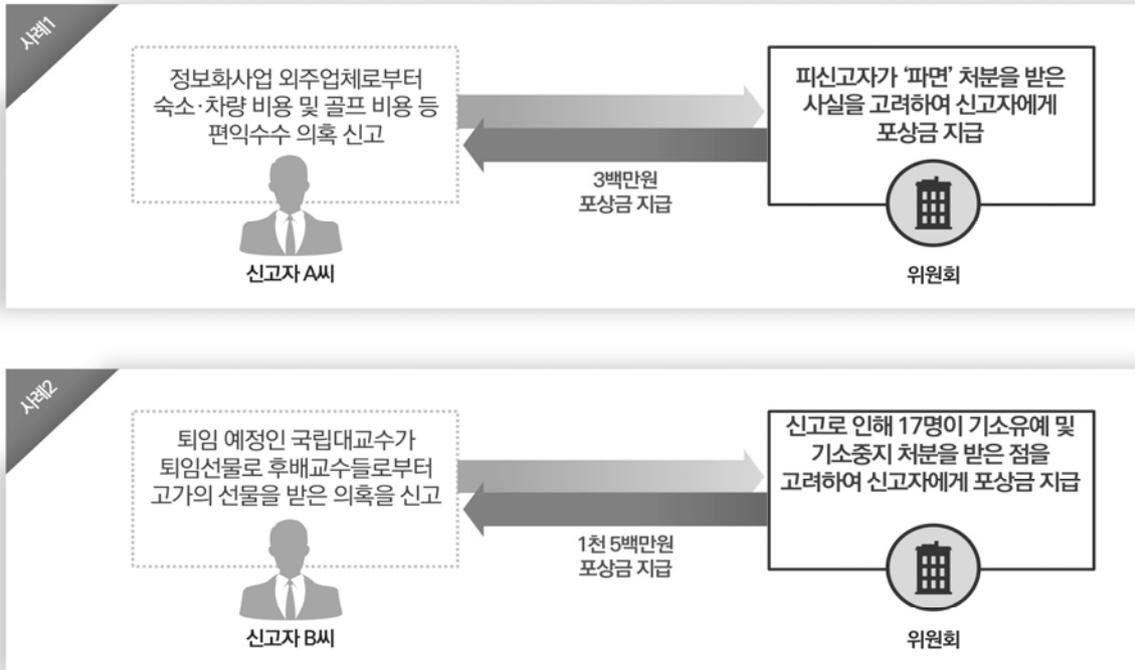
2. 포상금 제도



보상금 지급 사례 : 없음



포상금 지급 사례 : 2건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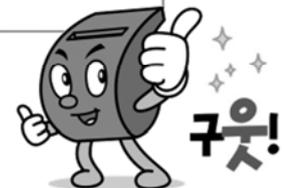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 발송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방지

내부신고자 색출 및 기관차원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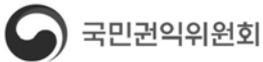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Memo



Memo



Memo



Memo

